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 1. 의결주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 수단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1회 제한에서 3회 제한까지로 차등하여 정하고,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행사를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로 정하는 한편,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비용 상환의무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환자 등에게 그 비용의 납부를 구상 청구하는 경우 분할 납부 기간을 12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리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25. ~ 10.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전단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12월의 범위내”를 “48개월의 범위”로 한다.

제26조의4를 제26조의5로 하고,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공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분할 납부 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제26조의4 관련)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
1.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회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9. 시험 중에 시험 관련 교재 또는 요약자료 등 시험과 관련된 물건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10.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2회
11.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12. 시험 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13. 시험 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회

비고: 위 표의 위반행위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유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 ③ (생략)</p> <p>④ <u>위원회의 회의는</u>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⑤·⑥ (생략)</p> <p><u>&lt;신설&gt;</u></p> <p>⑦ <u>위원회의 회의에</u>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위원회의 운영</u>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p>	<p>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회의 회의는</u>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u>위원회는</u>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⑧ <u>위원회 및 전문위원회</u>----- ----- ----- ----- ----- ----- ----- ----- ----- ----- ----- -----.</p> <p>⑨ ----- 제8항----- ----- <u>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u>----- -----</p>

정한다.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  
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  
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  
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  
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4 (생 략)

<신 설>

-----.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  
-----  
-----  
지체 없이 -----  
-----  
-----  
-----  
-----  
-----  
청구해야 ----- . -----  
----- 48개월  
의 범위-----  
-----.

제26조의4(응급구조사시험의 응  
시제한 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  
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의5 (현행 제26조의4와 같  
음)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생략)

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공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  
 -----  
 -----  
 -----  
 -----  
별표 1의2-----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58